

「평창군 사도의 구조기준 완화 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 1. 심사경위

- 제안일자 및 제출자 : 2016. 11. 21(월) 평창군수(안전건설과장)
- 회부일자 : 2016. 11. 25(금)
- 상정일자 : 2016. 12. 07(수) 제224회 평창군의회(정례회)  
제1차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 상정·의결

##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자 : 안전건설과장 장근용)

- 사도의 구조 기준을 완화하는 규제개혁을 통해 사도 개설에 따른 환경 훼손을 최소화하고 군민의 경제적 비용을 절감하고자 함.

##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 류지웅)

-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서 사도의 구조기준 완화에 대하여 지방자치 단체에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여 사도 개설에 따른 환경훼손을 최소화 하고 군민의 경제적 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심사결과 : 원안의결

6. 소수의견 요지 : 없음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임】 평창군 사도의 구조기준 완화 조례안 1부.

## 평창군 사도의 구조기준 완화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도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도의 구조기준을 완화하여 환경훼손을 최소화하고 군민의 경제적 비용을 절감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도의 폭 등 기준) 사도의 구조는 「농어촌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리도 이상의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지형상황 등을 참작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량 교행시설을 설치하는 등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차선평을 4미터 이상, 길어깨 0.5미터 이상으로 설치할 수 있다.

제3조(사도의 관리) 사도의 관리는 사도를 개설한 자가 관리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